
시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

- 소득안정자금, 경영안정자금, 가축입식자금 -

2017. 2.

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

농림축산식품부

축 산 경 영 과

1. 추진배경 및 지원방향

□ 배 경

- '16.11.16. 충북 음성 오리농장,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발생 이후 방역조치(이동제한) 시행
- 그에 따른 가금류 사육농가의 기회소득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에 대한 보전 대책마련이 필요

□ 지원방향

< 기본 방향 >

- ◆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 및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
- ◆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와 가축 입식 금지 불이행, 매몰 비협조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역의식 강화 도모
- ◆ 농가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지급액 감액

□ 주요 지원방안

① 소득안정자금

- 방역조치(이동제한)로 출하지연에 따른 추가 사육비 발생, 상품가치 하락, 입식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손실 등 농가 손실 보전(축발기금, 국고70, 지방비30)

② 가축입식자금

- 살처분 농가의 재생산을 위한 가축입식자금 지원으로 양축활동의 정상화와 경영안정 도모(농특회계 이차보전, 연리 1.8%, 2년거치 3년 상환)

③ 경영안정자금

-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부화장, 도계(도압)장, 가금류 가공장 등 업체 경영정상화 지원(농특회계 이차보전, 연리 1.8%, 2년거치 3년 상환)

소득안정자금 지원

1 | 지원목적

- ☐ 보호·예찰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지연, 정상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보전

2 | 사업개요

- ☐ 사업주관 : 시·도지사
- ☐ 지원대상 : 보호·예찰지역 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
 -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AI긴급행동지침(SOP)* 의해 출하기준일령을 초과하여 사육한 농가(이하 출하지연농가)
 - * AI긴급행동지침 : 역학 또는 출하전 AI검사 등에 따른 강제적 출하제한
 - 이동제한에 따라 정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(이하 정상 입식지연 농가)
 - 조기출하 등에 따라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(이하 조기출하농가)
- ☐ 지원내용 : 출하지연,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분 보조
- ☐ 지원제외 :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및
- ☐ 지원조건 : 축발보조 70%, 지방비 30%(축발보조 우선지급 가능)
 - 농식품부와 협의한 지자체 자체 이동제한의 경우 축발보조 50%, 지방비 50%
- ☐ 지원한도 : 피해액 범위 내에서 지원

3 | 지원기준

- ☐ 출하지연농가
 - 지원내용 :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추가 사육비용 발생, 기간 증가에 따라 과밀화로 폐사증가, 체증으로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피해 지원

① 추가 사육비 : 입추한 날로부터 정상출하 기일을 지나고 적정 사육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한 사육비

- 산출식 : $[(\text{수당 일일 사육비용} \times \text{추가 사육 기간}) \times \text{사육마릿수} - (\text{입식마릿수} - \text{폐사 마릿수})]$

- * 일일 사육비용 : 오리 35원/수, 육계(삼계) 12원/수, 토종닭 30원/수
- * 추가사육 기간 : 출하일(이동제한 해제일) - 추가 사육기간 경과 일
- 입추한 일로부터 사육한 일수가 육계/삼계는 33일 이상, 오리 43일 이상, 토종닭 77일 이상을 사육한 기간

② 폐사율 증가분 : 추가 사육기간 동안 밀식과 체중으로 폐사 수 증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

- 산출식 : 추가 사육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: $(\text{입식마릿수} \times 3\%) \times \text{산지가격}$
 추가 사육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: $(\text{입식마릿수} \times 5\%) \times \text{산지가격}$

- * 산지가격은 출하당일 관련협회 발표가격 기준
- * 병아리입식, 출하 마릿수는 관련 공급업체에서 확인

③ 상품가치 하락분 : 사육기간 증가에 따른 체중으로 적정 체중을 초과함에 따라 상품가치 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

- 산출식 : $[\text{사육마릿수}(\text{입식마릿수} - \text{폐사 마릿수}) \times \text{산지가격의 } 3\%]$
- * 계열사업자는 계열사 기준 출하기준 대비 과체중 시 사육수수료에서 감액 지급

○ 지원금액 : ①추가사육비 + ②폐사율 증가분 + ③상품가치 하락분

○ 출하지연 원인이 '이동제한 규정'에 의한 경우 보상, 비육 등 목적으로 농가·계열사의 고의적 출하 지연은 지원 제외

<적용 예>

예) 육계 50천수를 입식 사육한 농가가 '16.11.17일(33일령) 출하예정이었으나, 11.17 이동제한으로 '16.12.20일에 40천수를 출하한 경우(산지가격 2.5천원/kg)

손실분 구분	산 출 식	계
■ 추가 사육비용	$[12\text{원/일} \times 33\text{일} \times 47.5\text{천수}] = 18,810\text{천원}$	
■ 폐사 손실분	$2,500\text{수}(50,000\text{수의 } 5\%) \times 2.5\text{천원} = 6,250\text{천원}$	
■ 상품가치 하락분	$(47,500\text{수}) \times (2.5\text{천원} \times 3\%) = 3,563\text{천원}$	
계		28,623천원

☐ 정상입식 지연농가

○ 산출식 : 미입식 마릿수×마리당 소득의 80%×(입식제한기간/사육기간)

- 미입식 마릿수 : 최근 1년간 병아리 평균 입식마릿수

- 수당소득 : 육계 183원, 산란계 2,146원, 육용오리 1,019원, 토종닭 550원, 종오리 9,361원, 중계 2,700원, 산란중추 317원

* 최근 5년('11~'15년) 최고·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수당소득(통계청, 관련협회)

- 입식제한기간 : 이동제한 해제일－입식예정일*

* 입식예정일 : 전번 출하일 + 휴지기간 이후 입식 예정일(계열사업자 병아리 공급계획 확인)로 이동 제한된 날 이후

* 휴지기간(전년도 출하실적기준) : $[365\text{일} - (\text{전년도 회전수} \times \text{사육기간})] = \text{휴지일/회전수}$

- 사육기간 : 육계 33일, 토종닭 77일, 육용오리 43일, 산란계 365일

☐ 조기출하 등 출하 농가

○ 산출식 : 사료잔량 × 구입금액

○ 대상 조건 : AI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기출하를 협의한 경우에 한 함

- 이동제한 해제 이후 발생하는 부패변질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

- 사료잔량 확인 시 사료 이동제한 기간, 입고일자, 가축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 과도한 지원 금지(사료폐기 내역 확인 후 자금지급)

☐ 지자체 자체 이동제한에 대한 지원

○ 지원조건 :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경우

○ 지원방식 : 축발보조 50%, 지방비 50%

4 | 지원제외 및 감액규정

☐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
☐ 의무교육 미이수 농가는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액에서 5%를 감액한 후 지급

- 축산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·가축사육업 등록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

☐ 농식품부 사업지침 통보(농식품부 → 시·도)

- 시·도에서는 시·군에 전파하여 대상자에게 신청 가능하도록 홍보

☐ 지원신청(지원대상자 → 시·군)

- 지원신청자는 축산업등록증, 병아리 구입실적, 출하증명서 등 사업자 발행 공식 거래 영수증 및 내역서 등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 제출

-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시·군에서 보관

- 시군에서 대상자를 확인 후 시·도에 지원 신청(서식1)

- 시·도 : 시·군 제출 내용을 확인(기준 및 지원금액 등)후 농식품부에 제출

- 농식품부 : 시·도 제출 자료를 검토,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(시·도와 농협중앙회)하고 자금 배정

- 시·도 : 지방비 확보하여 지원하고, 완료 후 결과를 보고

[서식 1]

소득안정자금 지원신청표(총괄)

☐ 정상입식지연

(단위 : 천원)

축종	농가명	주소	주민번호	소득안정자금소요액			비고
				국비 (축발기금)	지방비	합계	
오리	홍길순						
합계							

가축입식 자금 지원

1 | 지원목적

- ☐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재사육을 위한 가축구매를 지원하여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

2 | 사업개요

- ☐ 사업주관 : 시·도지사
- ☐ 지원대상 : AI 방역조치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
- ☐ 지원조건 : 연리 1.8%, 2년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 상환
- ☐ 재원 : 농특회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(긴급경영안정자금)
- ☐ 신청기간 :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- ☐ 지원내용 :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 지원
- ☐ 지원한도액 : 1회 사육능력(수수) × 축종별 지원단가
 - * 빈 축사면적을 측정하여 계산한 추정사육수수와 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 동안 출하된 출하수수 중 적은 수수를 기준으로 계산

☐ 축종별 지원단가

축 종	지원단가(원/수)	비 고
육계	(종계 병아리)4,186 (실용계 병아리) 531	3년 평균
산란계	(중추) 3,882 (실용계 병아리) 1,307	"
토종닭	(종계 병아리) 9,000 (실용계 병아리) 528	"
오리	(종오리) 8,000 (새끼오리) 901	"

- ☐ 용자 희망농가는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용조사서를 첨부(서식 1)하여 해당 시장·군수에게 신청
 -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
- ☐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장관(지원부서 : 축산경영과)에 자금지원 요청(서식 1, 2)
- ☐ 농식품부(축산경영과)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, 관계부서(농업금융정책과), 시·도 및 대출취급기관(은행)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·통보
- ☐ 대출취급기관은 농가(업체)의 신청에 의하여 용자를 실행하고,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 관련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신청
- ☐ 신청자는 가축입식을 용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내 완료하고, 해당 시·군에서는 농가별 가축입식 여부를 확인하여 계획대로 입식되도록 하고, 실적 미달인 경우 해당두수 분 지원액은 회수 조치(시·도지사 확인)
- ☐ 시·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(시중은행)과 협조하여 가축입식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

[서식 1]

가축입식자금 신청 및 지원결과 서식

☐ 가축입식자금 지원신청서

(단위 : 천원)

[illegible]☐ 가축입식자금 지원 및 입식결과

(단위 : 천원)

[illegible]

경영안정자금 지원

1 지원목적

- ☐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
가금산업 조기 안정화에 기여

2 사업개요

- ☐ 사업주관 : 시·도지사
- ☐ 지원대상 :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
- ☐ 지원조건 : 연리 1.8%, 2년거치 3년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 상환
- ☐ 재원 : 농특회계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(긴급경영안정자금)
- ☐ 지원내용 : 원료구입비, 인건비,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
- ☐ 지원한도액 :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산정

관련 경영체	지원 한도액
부화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× 정지일/부화기간 × 부화수수료 * 부화기간 : 닭 21일, 오리 28일 / 부화수수료 : 150원/개
도계(압)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두수 × 정지일 × 도축수수료 * 도축수수료 : 닭 450원/수, 오리 600원/수
유기비료공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× 정지일 × 계분 판매이익(원/톤)/2
계란집하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집하물량 × 정지일 × 집하비용(20원/개)
닭·오리가공 공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× 정지일 × 가공비
사료공장	1일 사료생산실적 [AI발생 직전 월 생산량(kg)÷월 가동일수] × 영업중단일수 × 사료판매가격 [전월 매출액(원)÷전월 판매량(kg)]

주) 계분판매이익, 가공비, 매출액 등은 해당업체의 회계 및 납세자료 등 근거자료를
기준으로 산정하고, 정지일은 이동제한 일수로 산정

3**사업 추진체계**

- ☐ 용자 희망업체는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용조사서를 첨부(서식 1)하여 해당 시장·군수에게 신청
 -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
- ☐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장관(지원부서 : 축산경영과)에 자금지원 요청(서식 1, 2)
- ☐ 농식품부(축산경영과)는 업체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, 관계부서(농업금융정책과), 시·도 및 대출취급기관(은행)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·통보
- ☐ 대출취급기관은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용자를 실행하고,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 관련 규정에 의거 이차보전금을 신청
- ☐ 시·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(시중은행)과 협조하여 경영안정 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

[서식 2]

경영안정자금(이동제한) 사업신청서

사 업 명	이동제한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				
업 체 명					
업체주소					
업 종	부화장(), 도계(압)장 (), 유기비료공장 (), 계란집하장 (), 닭·오리 가공공장 (), 사료공장 ()				
대표자명		사업자 등록번호		전화 번호	() -
지원한도액	업 종	지 원 한 도 액			금액(백만원)
	부화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× 정지일/부화기간 × 부화수수료 * 부화기간 : 닭 21일, 오리 28일 / 부화수수료 150원/개			
	도계(압)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도축두수 × 정지일 × 도축수수료 * 도축수수료 : 닭 450원/수, 오리 600원/수			
	유기비료공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× 정지일 × 계분 판매이익(원/톤)/2			
	계란집하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집하물량 × 정지일 × 집하비용(20원/개)			
	닭·오리가공공장	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× 정지일 × 가공비			
	사료공장	1일 사료생산실적 [시발생 직전 월 생산량(kg)÷월 가동일수] × 영업중단일수 × 사료판매가격 [전월 매출액(원)÷전월 판매량(kg)]			
신청금액				_____백만원	
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계분판매이익, 가공비, 매출액 등 관련 근거자료					
2015년 월 일					
신청인(대표자) _____(인)					
○ ○ (시장·군수·구청장) 귀하					

[서식 3]

신 용 조 사 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	전화 번호	() -
생산자단체등. 회사,기타명칭		주민(사업자) 등 록 번 호		대표자 (성명)			
신청사업명	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보 조		대 출		자담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과거 1년간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	신용상태	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	양호	보통	불량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대출구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신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			천원		

※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“대출신청자료에” 의함

4. 종합의견

일 일 년

()협동조합장 (인)

()시군지부장 (인)